

상이처 외의 질병에 대한 진료비용 중 전상군경등의 본인 부담 비용

(제5조제1항 단서 및 제9조 단서 관련)

의료기관	구분		본인 부담 비용
1. 보훈 병원	가. 요양급여비용		(요양급여비용 총액 - 국민건강보험공단등에서 부담하는 비용) × 10/100
	나. 비급여비용		(비급여비용 총액 - 제5조에 따라 국가가 부담하는 비용) + (제5조에 따라 국가가 부담하는 비용 × 10/100)
2. 위탁 병원 및 공공단 체 의료 기관	가. 진료비용	1) 요양급여비용	제9조제1호에 따라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전상군경등이 부담하는 외용약제 비용 + [(요양급여비용 총액 - 제9조제1호에 따라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전상군경등이 부담하는 외용약제 비용 - 국민건강보험공단등에서 부담하는 비용) × 10/100]
		2) 비급여비용	(비급여비용 총액 - 제9조제2호에 따라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급여비용) + (제9조제2호에 따라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급여비용 × 10/100)
	나. 약 국약제비	1) 요양급여비용	제9조제1호에 따라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전상군경등이 부담하는 외용약제 비용 + [(요양급여비용 총액 - 제9조제1호에 따라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전상군경등이 부담하는 외용약제 비용 - 국민건강보험공단등에서 부담하는 비용) × 10/100]
		2) 비급여비용	(비급여비용 총액 - 제9조제2호에 따라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급여비용) + (제9조제2호에 따라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급여비용 × 10/100)

비고

1. 요양급여비용: 「국민건강보험법」 제41조에 따른 요양급여에 해당하는 진료비용
2. 비급여비용: 「국민건강보험법」 제41조에 따른 요양급여에 해당하지 않는 진료비용